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족 성폭력 범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56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대하여¹⁾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및 제305조)²⁾, 제305조의2³⁾에 따른 상습범 및 제305조의3에 따른 예비·음모죄⁴⁾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군사법원법」)에

1)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2)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3)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

다른 공소시효와 관련된 규정(제291조부터 제295조)을⁵⁾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내용으로, 군 조직 및 친족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은폐·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개정안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생략)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친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

(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군사법원법」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제292조(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併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 제293조(형의 가중·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현행	개정안
<신설>	<u>조의2, 제302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05조의3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③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u>

□ 다만, 2022. 7. 1. 이 법 제2조제2항제1호⁶⁾ 신설에 따라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하 “군인 등”이라 함)⁷⁾

- 6) 「군사법원법」 (법률 제18465호로 2022. 7. 1. 시행된 것)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7)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

이 평시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⁸⁾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¹⁰⁾ 죄에 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¹¹⁾이 적용되고 피해자

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한편,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은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 중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1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併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의 연령·장애 여부 또는 범죄유형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에 따른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됨.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공소시효 적용배제의 실익은 평시에 군인 등이 범한 범죄를 전제로 할 경우¹⁴⁾ 「형법」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죄¹⁵⁾가 단독으로 성립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바, 이 경우 실행에 착수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그 전 단계인 예비·음모죄에 대하여서만 현행 5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경과조치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친족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14)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5) 「형법」 제305조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함.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국방부는 친족에 대한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과 신고·수사의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¹⁶⁾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안과 연계하여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5

16) 의안번호 제2213748호, 전진숙의원 대표발의